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1-14

대 전 고 등 법 원

청주제1-3민사부

판 결

사 건 (청주)2023나50657 양수금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제 1 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3. 3. 16. 선고 2021가합6020 판결

변 론 종 결 2023. 8. 31.

판 결 선 고 2023. 10. 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00,804,3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관련 법리와 증거 등에 비추어 볼 때,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해당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5쪽 제1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B로부터 이 사건 환급금 채권을 양수받은 가장 큰 이유는, 원고와 비용정산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실제 약정된 보수 및 비용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존재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약정된 보수 및 비용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민사·행정사건의 소송대리인이 비용정산을 받기 위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소송물 자체를 양수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비용정산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라면, 그 환급계좌를 원고 명의의 계좌나 출금 제한이 걸린 계좌로 지정하는 등 다른 방법도 있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환급금 채권을 양수받은 것은 사실상 소송신탁을 통한 압류 무력화가 주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제1심판결문 제6쪽 제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⑤ 원고는, "이 사건 환급금 채권은 B 또는 피고에 의하여 발생된 것이 아니라, B 또는 피고가 전혀 알지도 못하였던 상황에서 원고가 밝혀내 발생한 것인바, 원고에 의하여 발생된 환급금 채권을 원고가 B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므로,¹⁾ 신탁법 제6조가 유추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등에 따르면, B는 2016. 10. 21.경 823,482,130원의 취득세를 피고(소관: 덕진구청장)에 신고,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그 중 817,234,299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²⁾,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³⁾에 따라 당초부터 납부할 필요 없었다. B가 위와 같이 착오로 취득세를 더 납부한 이상 취득세에 대한 경정 사유는 원래부터 존재하고 있었고, 다만 피고가 2021. 6. 3. 경정 청구 결과 통지를 함으로써 이 사건 환급금 채권이 확정된 것일 뿐이다.⁴⁾

한편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B와 피고가 경정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음에도, 원고가 법률전문가로서 경정 사유가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는 취지로 설회하여

1) "원고에 의하여 발생된 환급금 채권을 원고가 B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그 주장 자체로 모순이 있다.

2)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3) 제1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4) 국세환급금채권에 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납세의무자의 국세환급금채권은 오납액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납부 또는 징수시에 이미 확정되어 있고, 초과납부액의 경우에는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경정에 의하여 조세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때에 확정되며, 환급세액의 경우에는 각 개별 세법에서 규정한 환급 요건에 따라 확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31768 판결 등 참조). 한편 장래의 채권도 양도 당시 기본적인 채권관계가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어 그 권리의 특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할 수 있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5다21624 판결 등 참조).



보더라도, 원고는 B의 경정 청구를 정당하게 대리하는 것을 넘어서, 압류를 무력화함으로써 채권 전액을 지급받을 의도로 환급금 채권의 양도 자체에 대하여는 아무런 대가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환급금채권을 양도받은 것인바, B의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는 여전히 소송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채권양도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경정 사유가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는 사정을 들어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